

의안번호	2205649
의 퇴 인	김태호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3.
추 계 번호	24F5281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추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내국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시 법인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.7억원(연평균 1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특례기부금 대상기관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추가(안 제24조 제2항)	-1.3	-1.3	-1.3	-1.3	-1.3	-6.7	-1.3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 제2항 (기부금의 손금불산입)	○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 - (개정안)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추가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4조 제2항 (기부금의 손금불산입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전제하며 세수효과
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
 - 개정안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
하며 2025년 사업연도 관련 기부금 손입산입 등은 법인세 확정신고가 이
루어지는 2026년에 발생
-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추가하여
손금산입 비율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3년간 법인으로부터 조성한 기부
금 내역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손금산입액 변화를 산출
 - 최근 3년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연평균 기부금 18.9억원의
50%를 손금산입액으로 산출
 - 개정안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손금
산입액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감소한다고 가정하
고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(17.8%)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세수효과를 산출
 - 법인세 실효세율(총부담세액/과세표준): 2023년 기준 평균 17.8%
- 개정안으로 인한 손금산입 변경에 따른 법인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 - 개정안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으로
포함 시 내국법인의 기부금 지출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나, 동 추계에
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시설비·교육비·장학
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하
는 내용(안 제24조제2항)
 -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「법인세법」 상

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추가

- 「법인세법」상 기부금은 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,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

※ 손금산입한도액: (기준소득금액 - 결손금) × 50%

-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10%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

□ (대상 기관의 기부금 현황)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조성한 기부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8.9억원임

-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최근 3년간 내국법인으로부터 조성한 기부금은 총 56.8억원으로 연평균 18.9억원임

[표 1]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법인으로부터 조성한 기부금: 2021~2023년

(단위: 개, 억원)

	2021년	2022년	2023년	연평균
기부법인수	12	12	15	13
기부금액	16.2	15.2	25.3	18.9

자료: 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자료

□ (손금산입액 변화) 개정안에 따른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부금의 50%는 손금산입되므로 이에 따른 손금산입액 변화 계산

- 개정안에 따른 손금산입액 변화: 7.6억원 = 18.9억원 × 40%
 - 손금산입비율 40% = 특례기부금 인정 시 50% - 일반기부금 10%

(2) 추계결과

□ (세수효과) 손금산입액 변화(7.6억원 증가)에 따라 과세표준 감소를 전제, 법인세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계산

- 세수효과: 1.3억원 = 7.6억원 × 17.8%*

*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(총부담세액/과세표준): 2023년 기준 17.8%

(3) 추계결과

-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추가 시 2026~2030년 5년간 6.7억원, 연평균 1.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특례기부금 대상기관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추가(안 제24조 제2항)	-1.3	-1.3	-1.3	-1.3	-1.3	-6.7	-1.3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